

#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이행실태 보고서**

(점검대상기간 : 2014.1.1~2014.12.31)

2015.01.30

NICE신용평가(주)는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개척해 온 선도적 신용평가회사로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신용평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왔으며, 활발한 연구활동 및 신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등 신용평가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원칙의 준수를 위해 기본적인 덕목과 행동양식을 명문화한 최상위 규정인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2006년 5월 제정한 바 있으며, 2008년 5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개정하여 전세계 신용평가기관에게 적용을 권고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을 반영하여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2010년 1월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개정하여 홈페이지(<http://www.nicerating.com>)에 공시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04년 12월 제정하고 2008년 5월 개정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신용평가회사로서 NICE 신용평가가 확보하고자 하는 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투자자, 피평가자 및 시장에 대한 의무, 그리고, Code of Conduct 공시 및 적용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동 Code of Conduct의 준수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내부교육과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1년간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의 항목별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밝히고자 합니다.

---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NICE 신용평가(주) 준법감시실(02-2014-626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인터넷([www.nicerating.com](http://www.nicerating.com))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 A. 신용평가 과정의 질

### ■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의 수립과 적용

- NICE신용평가는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방법론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금융상품 및 업종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중 Corporate일반론(단기신용등급 결정, 신용평가 절차, 공기업)을 공시하였으며, 산업별 평가방법론(조선, 증권, 비금융일반기업, 발전, 건설, 해상운송)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또한, PF평가방법론 중 발전소, 산업단지, 회원제골프장, 유료도로 4개 부문에 대해 신규로 제정하였고, 정부신용등급(선택적부도 개념도입), 기타(오브젝트금융)에 대한 방법론을 제정하였습니다.

[신용평가방법론 공시 현황(2014.1.1~12.31)]

번호	구분	신용평가방법론	공시일	비고
1	Corporate 일반론	단기신용등급 결정	2014-02-19	개정
2	산업별 평가방법론	조선	2014-04-29	개정
3	산업별 평가방법론	증권	2014-04-29	개정
4	Corporate 일반론	신용평가 절차	2014-05-09	개정
5	PF평가방법론	발전소	2014-05-20	제정
6	PF평가방법론	산업단지	2014-05-20	제정
7	PF평가방법론	회원제골프장	2014-05-20	제정
8	PF평가방법론	유료도로	2014-05-20	제정
9	산업별 평가방법론	비금융일반기업	2014-05-23	제정
10	산업별 평가방법론	발전	2014-05-23	제정
11	정부신용등급	선택적부도 개념도입	2014-07-04	제정
12	기타	오브젝트금융	2014-07-10	제정
13	Corporate 일반론	공기업	2014-07-28	개정
14	산업별 평가방법론	건설	2014-11-12	개정
15	산업별 평가방법론	해상운송	2014-11-12	개정

## ■ 신용평가 과정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NICE신용평가의 모든 신용등급 결정 권한은 내규에서 정한 신용등급평정위원회에서 보유하며,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평가업무규정 및 신용평가업무세칙, 신용등급평정위원회운영지침 등의 성문화된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뢰성 및 적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의 적정성 및 평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을 애널리스트 및 평정위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관계 법규와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평정기록 관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설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합평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킨 신통합평가시스템을 2014년 10월 6일 오픈하였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조직은 개별 신용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 실무팀과 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B. 공시 이후 신용등급의 사후관리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규정 및 신용평가업무세칙, 정기평정실시지침, 내부심사운영지침 등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의 공시 이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환경변화가 기업의 신용위험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도자료, 스페셜리포트 등의 공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등급 사후관리 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C. 신용평가 과정의 성실성

- NICE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 임직원은 신용평가 과정에서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및 관련 내규에 규정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 임직원은 신용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특정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직간접적인 언급 및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준법감시부서를 두어 Code of Conduct, 관련 내규 및 법규 등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 준법감시부서는 관련 준법감시규정 및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준법감시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 A. 총칙

NICE신용평가는 NICE신용평가, 피평가자, 투자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경제적, 정치적, 기타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행위를 하거나 자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평가방법론, 평가기준, 평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 확보

- NICE신용평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335조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7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항에 따라 NICE신용평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3.4.1항에 의거하여, 신용평가서 교부시 NICE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을 공시하는 시점기준에 NICE신용평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피평가자가 NICE신용평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기재된 “NICE신용평가(주)의 발행사에 대한 신용평가 적정 여부”를 함께 발부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2014년 1월 16일자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영업조직과 평가조직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조직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RM, BD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가조직은 일반기업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산업평가본부와 금융회사 및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금융평가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조직인 기업 및 금융평가본부의 해당 본부장이 담당하고 있고, 여타 평정위원은 평가연구소 및 평가조직의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조직이 신용등급평정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담당직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애널리스트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애널리스트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등급결정의 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등급평정위원회 소집 시 “ 평정위원회 참석자 확인사항” 을 체크하게 하여 피평가기업의 이해관계 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담당직원에 대한 급여정책이 신용평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평가 담당직원의 보수가 신용평가등급의 결정, 평가수수료 등 피평가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도록 하여, 신용평가 담당직원은 개별 직원이 창출한 수익에 근거하여 평가되거나, 보상받지 아니합니다.

■ 이해상충문제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사업부문과 비신용평가 사업부문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한국신용정보(주)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사업과 그 딸린 업무인 투자평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예산수립 등에 있어 신용평가사업부문과 투자평가사업부문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수수료 체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평가수수료의 피평가자로부터 수취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이후 평가건부터는 피평가대상 기업과 관련

한 신용평가계약 및 비평가용역계약 실적과 관련한 최근 2년간 내역(신용평가용역과 비평가용역 건수 및 수수료 총액), 피평가기업이 기업집단일 경우 해당 부문 전체 수수료 중 그 기업집단의 수수료 비중, 피평가기업의 다른 신용평가 및 비평가용역 수행여부, 신용평가용역 관련일자(평가개시일, 계약체결일, 평가완료일) 등을 평정요지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내용 확대를 통해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일체의 영업활동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실무와 수수료관련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계약체결, 수수료 및 매출채권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는 영업부서(RM, BD본부)에서 전담하도록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Code of Conduct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별도의 준법감시조직으로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의사결정의 적법성, 타당성 및 효율성을 주로 감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평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 및 내규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보고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및 이해상충관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판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존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의 상충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준법감시조직과는 별도로 신용평가사업과 타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문제를 관리하는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내부운영규정으로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세칙 및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부서(본부)간 이해상충여부의 심의,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심의, 기타 준법감시부서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증권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분기별 연 4회에 걸쳐서 증권보유 현황 및 거래내역을 준법감시부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신고시 제출된 자료내용 점검을 통해 해당 증권의 보유적정성 여부 및 행동규범의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의 이익의 수령 및 제공과 관련한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준수를 위해 2013년 11월에 당사의 내규를 관련 법규에 부합하게 변경하였으며, 당사가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편익 수수 한도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이내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참여 인원에 대한 편익수령 여부 확인절차 시행과 함께 신용평가업무 관련 편익제공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5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신용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를 금지하는 조치를 2012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13년 1월 31일 이후에는 내규 개정을 통해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연속평가 기간을 4년(업종별 책임자는 5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에 참여하였던 애널리스트가 발행사 또는 관련 금융기관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애널리스트가 최근 2년간 수행하였던 평정업무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3. 투자자, 발행자 및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 A.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전자우편서비스, 간행물 등을 공시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방법론, 장기신용등급평가 결과분석, 산업위험평가, 연간부도율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인 평가방법론, 등급 및 부도의 정의, 신용평가실적서 등의 자료를 모두 홈페이지 (<http://www.nicerating.com>)에 공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관련 정보가 더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여러 기

관에 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규에서 정한 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공시를 기한 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 B. 비밀정보의 관리

- NICE신용평가는 평가기업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해 신용평가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유지 계약 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정보 및 자료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제공된 기밀정보는 별도 관리하고, 피평가자가 제공한 정보는 신용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임직원이 신용평가과정에서 피평가자가 제공한 정보를 개인적 이해관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와 관련된 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4. 평가사업 Code of Conduct 공시 및 적용

- NICE신용평가는 IOSCO의 신용평가활동원칙(IOSCO Principles Regarding the Activities of Credit Rating Agencies) 및 기본행동강령(IOSCO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의 각 조항을 지지하며 동 조항을 충족한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 및 임직원은 Code of Conduct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준법감시부서는 정기적으로 동 내용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